

대전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단1290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6. 29.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20 지분에 관하여 2022. 3. 2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20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2022. 3. 28. 접수 제108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9. 8. C 외 1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29040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1. 5. 20.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6. 11. 확정되었다.

나. C의 모친 D은 2022. 3. 9.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망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4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망 D의 상속인으로 C, 피고 등 5명의 자녀들이 있었다.

다. C, 피고 등 5명의 공동상속인들은 2022. 3. 28. 이 사건 상속재산 중 피고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각 3/20 상속지분을 모두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마.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인 2022. 6. 20. C은 대전가정법원 2022느단421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원상회복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3/20 지분에 관한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채무자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 중 C의 상속분인 3/20 지분에 관한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속포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뒤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분할협의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상속포기심판은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로 평가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에 수리된 것으로 상속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상속포기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이 2007. 11.경부터 2008. 4. 11.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5,9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을 변제키로 하고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채권자인 피고에게 지분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바(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C에 대해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C이 거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채권자인 피고에게 변제조로 양도하고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실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중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제10층 호 111.57㎡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대전광역시 중구 대30956.9㎡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30956.9분의 65.13

- 이상 갑구 순위번호 22번 지분 4분의 3(20분의 15) -

1) 원고의 2023. 5.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2항에는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외 C의 상속지분 3/20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